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한국조폐공사의 목적과 업무에 투표용지 제조 추가〉

■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8824호)

2025. 9.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한국조폐공사의 목적과 업무에 투표용지 제조 추가 (안 제1조 및 제11조제1항제2호)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구자근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3. 12.

다. 회 부 일 : 2025. 3.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선거법」에는 공직선거 투표용지 제작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도 공직선거 투표용지에 위·변조를 막기 위한 별도의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전투표용지와 본투표용지의 불법적인 교체나 또는 끼워넣기 등의 불법의 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이러한 공직선거에 대한 불신은 투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조폐공사에서 공직선거에 대한 투표용지를 제작하고 투표용지에 대한 위·변조를 막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한국조폐공사의 목적과 업무내용에 공직선거에 대한 투표용지 제작을 추가함으로써 불법선거를 사전에 예방하고 민주주의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11조제1항제2호).

II. 검토의견

1. 한국조폐공사의 목적과 업무에 투표용지 제조 추가 (안 제1조 및 제11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 목적(제1조) - 이 법은 한국조폐공사를 설립하여 은행권, 주화, 국채, 공채, 각종 유가증권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u>사용할</u> 특수제품의 제조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업무(제11조) - 은행권·주화 및 국채·공채의 제조(제1호) -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발행하는 각종 <u>유가증권</u>의 제조(제2호) - 제1호 및 제2호의 물품의 제조에 드는 각종 용지의 제조(제3호) - 생략(제4호~제9호)	○ 목적(안 제1조) - 이 법은 한국조폐공사를 설립하여 은행권, 주화, 국채, 공채, 각종 유가증권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u>사용할 공직선거 투표용지 등</u> 특수제품의 제조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업무(안 제11조) - 은행권·주화 및 국채·공채의 제조(제1호) -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발행하는 각종 <u>유가증권 및 공직선거 투표용지</u>의 제조(안 제2호) - 제1호 및 제2호의 물품의 제조에 드는 각종 용지의 제조(제3호) - 생략(제4호~제9호)

개정안은 한국조폐공사의 목적과 업무에 공직선거 투표용지의 제조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함.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고(법 제151조 제1항),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인쇄·납품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는 과정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여 입회하도록 하며(법 제151조 제5항),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의 경우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고 있음(법 제151조 제6항)¹⁾.

또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모형을 선거일 전 7일까지 공고하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를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인쇄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²⁾.

이에, 시·구·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계약을 통해 투표용지 인쇄소를 결정 및 공고하고 해당 인쇄소를 통해 본 투표 투표용지를 인쇄하고 있음.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계약을 통해 사전투표용지 용지를 구매하고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함.

다만, 투표용지가 외부 민간업체에서 제작되는 구조에서 인쇄업체의 보안관리 수준, 종사자의 기밀 유지 및 인쇄물 유출의 우려가 있으며, 공직선거 투표용지 위·변조를 막기 위한 별도의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1) 「공직선거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①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며, 이를 송부받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용지를 봉합하여 보관하였다가 투표함과 함께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인쇄·납품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는 과정에,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수령·보관 및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는 과정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각각 참여하여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⑥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및 일련번호를 제외한 그 밖의 정보를 담아서는 아니 된다.

2) 「공직선거법」 제152조(투표용지모형 등의 공고)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모형을 선거일전 7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인쇄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않아 불법적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공직선거 투표용지를 한국조폐공사가 제작하도록 하여 투표용지의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투표용지 관리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임.

개정안에 따라 공공기관인 한국조폐공사가 일괄하여 공직선거 투표용지를 제작할 경우, 투표용지의 위·변조 가능성과 공직선거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한국조폐공사는 인쇄시점과 투표시점 간 제한적인 시간³⁾과 인력을 고려하면 공사가 일괄하여 모든 지역의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것은 곤란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임.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의 경우 지역구, 지방자치단체별로 본 투표 투표용지에 인쇄되어야 하는 내용이 상이⁴⁾하며,

3)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이하 “후보자등록신청시일”이라 한다)부터 2일간(이하 “후보자등록기간”이라 한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의2(투표용지 인쇄시기) ① 투표용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 후에 인쇄한다. 다만, 인쇄시설의 부족 등 선거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그 날을 변경할 수 있다.

1.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투표용지

가. 대통령선거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13일

나. 국회의원선거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9일

다.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2.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투표용지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의 보궐선거등의 경우 투표용지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9일 후에 인쇄한다. 다만,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와 동시에 실시할 때에는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예에 따른다

특히,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및 광역의회 의원 선거 등 총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진행되고, 후보자의 수도 다수⁵⁾이며, 시·도(17개)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252개)의 청인을 각각 제작·인쇄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조폐공사가 복잡하고 다양한 투표용지를 선거 일정⁶⁾에 맞춰 전국에 공급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더욱이 현재 제지는 부여의 제지본부에서, 화폐인쇄는 경산의 화폐본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 개정안에 따라 모든 투표용지를 한국조폐공사에서 인쇄할 경우 부여와 경산에서 각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로 투표용지를 이송하여야 하므로 제한된 시간에 투표용지 이송을 위한 추가적 인력과 비용 소모가 발생할 가능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⁷⁾.

한편, 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조폐공사에 투표용지 인쇄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대표발의_의안번호_2208843)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위 개정안의 심사 경과를 고려한 심사가 필요하겠음.

4)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254개의 지역구마다, 지방선거의 경우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 및 이에 속한 읍·면·동마다 별도의 투표지를 인쇄하여야 함.

5) 제8회 지선 기준 7,616명

6) 각 선거의 투표용지 인쇄시기는 아래와 같음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9일, 국회의원 선거: 선거일 전 9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전 16일

7) 한국조폐공사는 투표용지 인쇄까지 담당하기는 곤란하나, 선거관리위원회에 미인쇄 투표용지를 공급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급용지를 활용하여 인쇄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조폐공사를 설립하여 은행권, 주화, 국채, 공채, 각종 유가증권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u>사용할</u> 특수제품의 제조(製造)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사용할</u> 공직 <u>선거 투표용지</u> 등----- ----- ----- -----.
제11조(업무) ① 공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발행하는 각종 <u>유가증권</u> 의 제조 3. ~ 9. (생략) ②·③ (생략)	제11조(업무) ① ----- -----. 1. (현행과 같음) 2. ----- ----- ----- <u>유가증권 및 공직선거 투</u> <u>표용지</u> ----- 3. ~ 9.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문의처

02)6788-5150